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내용 개정 및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세출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일치토록 개정
- 나. 조례 제3조 세입에 관련내용을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9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
-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의2, 제30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 「여객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0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 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을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제2항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의한 도시계획세징수금중”을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의 경비를 충당한다”를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부분 중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를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에서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제1항제9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 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 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 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 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 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 차장법」----- -----.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법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 된 다음 각호 1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 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 조제 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 련등)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 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u>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등)</u>	<u>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u>
<u>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u> <u>(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등)</u>	<u>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u> <u>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u>
<u>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비비용</u> <u>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u> <u>관련등)</u>	<u>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u> <u>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u> <u>비용 납부금</u>
<u>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u> <u>련등)</u>	<u>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u> <u>과태료</u>
<u>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u> <u>법 제43조 관련등)</u>	<u>6.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주</u> <u>차목적의 도로점용료</u>
<u>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u> <u>비촉진법 제21조 관련등)</u>	<u>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u> <u>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u>
<u>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u> <u>31조의2 관련등)</u>	<u>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u> <u>조에 따른 과태료</u>
<u>9.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u> <u>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u>	<u>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u> <u>조에 따른 과태료</u>
<u>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u> <u>전입금</u>	<u>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u> <u>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u>
<u>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u> <u>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u> <u>수입</u>	<u>11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u> <u>전입금</u>
<u>12. 기타 잡수입</u>	<u>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u> <u>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u> <u>관련 수입</u>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의 경비를 충당한다.

1. ~ 2. (생략)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
 4. ~ 5. (생략)
- <신설>

6.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13.그 밖의 잡수입

② -----
---- 「주차장법 시행령」 ----
-----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

-----.

제4조(세출) ① -----
-----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 5. (현행과 같음)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의 -----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 는 사용할 수 없다.	까지----- 따른 ----- ----- ----- -----.
--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55조로 이동 <2008.3.28.>]

-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 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5.1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에서 이동 <2008.3.28.>]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

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에서 이동 <2008.3.28.>]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4.>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삭제 <1999.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 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 ④ 삭제 <2009.1.7.>
- ⑤ 삭제 <2009.1.7.>
- ⑥ 삭제 <2009.1.7.>

[전문개정 1983.12.31.]

[제목개정 2010.3.2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填)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2.2.1.>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삭제 <2012.2.1.>
8. 삭제 <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4.5.21.>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
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1

5., 2013.3.23.>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

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전문개정 2011.6.8.]

소과 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성철
	담 당	이재익
	담 당 자	오탁근 (480-6254)